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2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허영  
이원택·박민규·윤준병  
백선희·조계원·김교홍  
신정훈·문금주·정준호  
정진욱·조인철·이개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

조약2 신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 ③ (생략)</p> <p>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⑤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의2(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u></p>

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